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9일
복 지 건 설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31일, 고영찬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3년 5월 31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6월 9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 (안 제4조 및 제5조)
- 위반차량 조치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주차구역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의원발의되었으며 총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 (안 제4조 및 제5조)
- 위반차량 조치 (안 제6조)

다.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공공기관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됨.

다만,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보다 통합화된 관리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